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8. 06. 25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희롱 방지조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라 경동대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경동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대상으로 한다.

제3조(성희롱·성폭력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 제2장 성희롱·성폭력 예방 필요조치

제4조(필요조치) 경동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총장은 매년 상반기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총장의 책무)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5. 임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7.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 확보
8.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총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총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총장 및 소속(부서) 장은 매년 최소 1회 이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 임용된 사람 또는 신규 입학한 학생에 대해 2개월 이내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보직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장 성희롱·성폭력 고충 접수 및 처리

제7조(양성평등센터)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교직원, 학생 및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성희롱·성폭력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양성평등센터를 설치하고 양성평등센터 내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소를 둔다.

- ② 각 캠퍼스별 양성평등센터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소장, 고충상담원은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각 캠퍼스별 센터장, 소장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소는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⑤ 양성평등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 관련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⑥ 양성평등센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 상담소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고충,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조사 과정에서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상세히 기록 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제10조(조사결과에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총장은 제12조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 제4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총장은(위임받은 자 포함)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총장은(위임받은 자 포함) 피해자의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위원회 설치

제13조(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총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외부 전문가를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요청·보관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회의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 1인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특정 위원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 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고충상담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조치 사항,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요구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징계)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총장은 고충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 제6장 재발방지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총장은 부서전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총장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총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장은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은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직무상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규정 및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별지 제2호 서식]

<b>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b>					
접수일			담당자	(서명)	
<b>당사자</b>	<b>신청인</b>	성명		사번	
		소속		직급	
	<b>대리인</b>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사번	
		소속		직급	
	<b>행위자</b>	성명		사번	
		소속		직급	
<b>상담 (신청) 내용</b>	<p>※ 육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p>				
<b>요구사항</b> (중복선택가능)	<p>1.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                      2. 공개 사과 (    )</p> <p>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타 (    )</p>				
<b>처리 결과</b>					
<b>비고</b>	<p>※ 관련 자료 별도 첨부 등</p>				

[별지 제3호 서식]

## 서 약 서

본인은 20 년도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독립된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알게 된 사안 및 심의 결과 등에 대해 제3자에게 절대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서약서의 내용을 확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위반할 시에는 즉시 해임이 됨은 물론 향후 기타 어떠한 불이익에 대하여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경동대학교 총장 귀하